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92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김 건·박충권·이헌승

이성권 • 박덕흠 • 윤상현

김용태 · 김기웅 · 인요한

최보윤 · 김태호 · 김장겸

최수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문헌의 수집, 정리, 연구 편찬, 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인공지능(AI)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 할 수 있으며, 디지털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 고전문학 번역 등에 인공지 능(AI)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 는 것임(안 제6조).

법률 제 호
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"제5호까지의"를 "제6호까지의"로한다.

6. 고전문헌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업무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사업) 번역원의 사업은 다	제6조(사업)		
음 각 호와 같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6. 고전문헌과 관련된 인공지능		
	기술을 이용한 업무 지원		
<u>6.</u> 제1호부터 <u>제5호까지의</u> 사업	<u>7제6호까지의</u>		
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			
로 정하는 사업			